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17. . . (제 회)	

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정진엽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17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제안이유

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」이 개정공포(2016.12.2.)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구급차 운행연한 관련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구급차 운행연한 연장 절차 및 세부사항(안 제7조의2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(별첨)

보건복지부령 제 호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##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

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 제2항 단서를 “다만,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구급차의 수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”로 신설한다.

제7조의2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구급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구급차 운용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구급차에만 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차 차령조정신청서에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의2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2항에 따라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구급차운용자는 해당 구급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차령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: 그 다음 월요일
2. 차령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: 그 다음날
3. 차량 파손에 따른 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령만료일까지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관할관청이 차령만료일 이전에 인정할 경우 : 관할관청이 별도로 정한 날

제7조의2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는 구급차운용자의 신청을 받으면 제3항에 따른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<b>구급차 차령조정 신청서</b>			처리기간 즉 시
운용기 관	명칭	전화번호	
	소재지		
소유자 (대표 자)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	
차대번호			
등록번호			
제작년월일			
<p>「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7조의2 에 따라 구급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월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신청인  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</p>			
<p>※ 첨부서류</p> <p>「자동차관리법」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한 임시검사 합격통지 서 1부 및 자동차 등록원부</p>			

210mm×297mm(신문용지 54g/m<sup>2</sup>)

##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

자동차 등록번호		차 종	
차 명		형 식 및 연 식	
차 대 번 호		원 동 기 형 식	
운 용 기 관	명 칭	전 화 번 호	
	소 재 지		
소 유 자	성 명	생 년 월 일	
	주 소	(전화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)	

「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7조의2에 따라 위의 구급차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

자동차검사대행자

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(신문용지 54g/m<sup>2</sup>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의2(운행연한) ① (생략)</p> <p>② 구급차의 차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.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7조의2(운행연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구급차의 차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. <u>다만,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구급차의 수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.</u>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구급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구급차 운용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구급차에만 <b>별지 제1</b></u></p>

호서식의 구급차 차령조정신청서  
에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4조에 따  
른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하는  
별지 제2호서식의 구급차 임시검  
사 합격통지서를 시장·군수·구  
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라 차령의 연장을 신  
청하려는 구급차운용자는 해당  
구급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 
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하  
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 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
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 
시장·군수·구청장에 신청하여  
야 한다.

1. 차령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  
요일인 경우 : 그 다음 월요일

2. 차령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:  
그 다음날

3. 차량 파손에 따른 정비 등 불가  
피한 사유로 차령만료일까지 차  
령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곤란  
하다고 관할관청이 차령만료일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

<신 설>

③ (생 략)

이전에 인정한 경우 : 관할관청이  
별도로 정한 날

⑤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4조에 따  
른 자동차검사대행자는 구급차운  
용자의 신청을 받으면 제3항에 따  
른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 
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⑥ (현행과 같음)